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14064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11.

제안자 : 국토교통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건명	의안번호	발의자	회부일	회의정보	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	2201371	이재강의원 등 14인	'24.7.5.	상정	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('24.8.21.)
				소위 심사	제42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('25.7.16.)
				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('25.9.24.)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	2205346	정준호의원 등 12인	'24.11.8.	상정	제420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('24.12.23.)
				소위 심사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('25.9.24.)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	2208147	손명수의원 등 17인	'25.2.14.	상정	제428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('25.8.21.)
				소위 심사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('25.9.24.)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	2208219	홍기원의원 등 11인	'25.2.18.	소위 심사	제42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('25.7.16.)
				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('25.9.24.)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	2210058	이성권의원 등 13인	'25.4.24.	상정	제428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('25.8.21.)
				소위 심사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('25.9.24.)

건 명	의안번호	발의자	회부일	회의정보	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	2211196	조경태의원 등 11인	'25.7.2.	상정	제428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('25.8.21)
				소위 심사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('25.9.24.)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	2211310	복기왕의원 등 15인	'25.7.8.	소위 심사	제42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('25.7.16.)
				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('25.9.24.)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	2211384	윤종오의원 등 14인	'25.7.10.	소위 심사	제42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('25.7.16.)
				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('25.9.24.)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	2211671	차규근의원 등 12인	'25.7.24.	소위 심사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('25.9.24.)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	2211916	김영배의원 등 10인	'25.8.4.	소위 심사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('25.9.24.)

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(2025. 9. 25.)는 위 10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「국회법」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가. 비행규칙의 적용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·기관·단체 등으로 확대하고, 공해상에서 「국제민간항공협약」 및 같은 협약 부속서의 준수 의무를 명시함(안 제67조제1항 및 제3항).
- 나.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,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, 시설·장비의 설치, 개량 및 유지보수, 업무수행 확인 및 평가, 통계의 수집 및 작성 등을 규정하고, 이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기관 내에서 서비스제공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9조의2 신설).
- 다.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의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‘화재의 예방·진화, 수색·구조, 산림 순찰 등 재해·재난의 예방 및 대응활동’에 사용되는 경우를 추가함(안 제131조의2제2항).
- 라. 누구든지 통제구역 중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함(안 제127조제5항 신설 및 제161조제2항 등).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4호의3라목 중 “사람이”를 “자가”로 한다.

제67조제1항 중 “사람은”을 “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국제민간항공협약」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른 기준·절차·방식 등에 관한 사항이 비행규칙과 다른 경우 공해상(公海上)에서는 「국제민간항공협약」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.

제6장에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9조의2(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8조 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 및 공고,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(이하 이 조에서 “항공교통업무등”이라 한다)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항공교통업무등 표준화
2.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
3.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시설·장비의 설치, 개량 및 유지·보수

4. 항공교통업무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
5.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작성
6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
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127조의 제목 “(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)”을 “(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3항제2호”를 “제3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누구든지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제구역 중 안전·국방 등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(이하 “비행금지구역”이라 한다)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기상관측, 국경행사, 시험 또는 연구·개발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
2. 학교교육, 오락·놀이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개인의 취미·여가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
3. 제2항·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및 제129조제2항에 따른 비행허가를 받은 경우

제131조의2제2항 중 “재해·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·구조, 화재의 진화”를 “화재의 예방·진화, 수색·구조, 산림 순찰 등 재해·재난의 예

방 및 대응활동”으로 하고, “제129조제1항, 제2항, 제4항 및 제5항”을 “제129조제1항, 제4항 및 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61조제2항 중 “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
2.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

제16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
제166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 “제161조제2항이”를 “제161조제2항제1호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7조(제4항의 개정규정은

제외한다), 제161조제2항·제4항 및 제166조제1항·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, 제89조의2, 제127조제4항 및 제1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24의2. (생 략)	1. ~ 24의2. (현행과 같음)
24의3. “항공교통데이터”란 항공교통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.	24의3. ----- -----.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제6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<u>사람</u> 이 작성·제출하여야 하는 비행계획 및 이와 관련된 자료	라. ----- ----- <u>자가</u> ----- -----
마. ~ 카. (생 략)	마. ~ 카. (현행과 같음)
25. ~ 34. (생 략)	25. ~ 34. (현행과 같음)
제67조(항공기의 비행규칙)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<u>사람은</u> 「국제민간항공협약」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·절차·방식 등(이하 “비행규칙”이라 한다)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.	제67조(항공기의 비행규칙) ① -- ----- <u>자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국제 민간항공협약」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른 기준·절차·방식 등에 관한 사항이 비행규칙과 다른 경우 공해상(公海上)에 서는 「국제민간항공협약」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89조의2(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 절차의 설정 및 공고,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(이하 이 조에서 “항공교통업무등”이라 한다)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항공교통업무등 표준화
2.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인력의
수급 및 교육훈련
3.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시설·
장비의 설치, 개량 및 유지·
보수
4. 항공교통업무등에 대한 확인

제127조(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) ① ~ ③ (생략)

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<신 설>

및 평가

5.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작성

6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
정하는 업무

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
등의 표준화 및 평가 등에 필
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
정한다.

제127조(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3항

⑤ 누구든지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제공역 중 안전·국방 등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(이하 “비행금지구역”이라 한다)에서 항공

	<u>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 시켜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<u>1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기상관측, 국경행사, 시험 또는 연구·개발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</u> <u>2. 학교교육, 오락·놀이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개인의 취미·여가활동에 사용되는 경우</u> <u>3. 제2항·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및 제129조제2항에 따른 비행허가를 받은 경우</u>
제131조의2(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) ① (생략) 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<u>재해·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·구조, 화재의 진화, 응급환자</u>	제131조의2(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화재의 예방·진화, 수색·구조, 산림 순찰</u>

후송,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(훈련을 포함한다)하는 경우(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)에는 제129조제1항, 제2항,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(생략)

제161조(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) ① (생략)

②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신설>

등 재해·재난의 예방 및 대응 활동-----

-----제129조제1항, 제4항 및 제5항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61조(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-----

1.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

<신 설>

③ (생 략)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단서 신 설>

1. ~ 3. (생 략)

제16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9. (생 략)

10. 제124조를 위반하여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(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11. ~ 15. (생 략)

②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

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

2.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66조(과태료) ① -----
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-----

-----제161조제2항제1호
가-----

11. ~ 15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(<u>제161조제2항이</u>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----- ----- ----- <u>제161조제2항제1호가</u> ----- ----- -----.
③ ~ ⑦ (생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